2018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학칙

2018. 3.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본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재능이 뛰어 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명칭)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이라 칭한다.(이하 '영재교육원' 이라 한다)
- 제3조(위치) 본 영재교육원은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번지에 둔다.

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

제4조(수업연한) 본 영재교육원의 수업연한은 해당 학년별로 1년으로 한다. 제5조(입학자격) 본 영재교육원에 해당 학년별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1. 이천시 소재 초등학교 5~6학년과 중학교 1~2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
- 2. 학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관찰·추천자료 20%, 창의적문제해결력 평가 40%, 심층수업평가 40%를 반영하여 선발 예정인원 내의 등위의 성적을 얻은 자로
- 3.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로 한다.
- 4. 소외계층 일정비율 우선선발
 - 가. 최종선발 정원 중 10% 이내에서 소외계층 학생을 소속 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아 별도의 전형절차를 통하여 우선 선발할 수 있다.
 - 나. 소외계층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장애 학생, one-stop 서비스 1단계 기초 수급대상자, 다문화 가정, 저소득층 및 가정환경이 불우한 자로 그 세부적인 기준은 입학대상자 추천기관인 초, 중학교 장이 정할 수 있음
 - 다. 가.항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전형 선정인원이 10%미만인 경우 일반전형 선정인원을 추가 할 수 있다.

제3장 학급수 및 학생정원

제6조(학급수, 학급당 학생수) 학급 수는 초등학교 5~6학년 및 중학교 1~2학년별 각 1개 학급으로 총 4개 학급으로 하며, 각 학급당학생수는 20명 이내로 편성한다.

제4장 입학

- 제7조(입학시기) 입학시기는 매학년 시작일로부터 6주일 이내로 한다.
- 제8조(입학결정) 본 영재교육원의 입학은 학칙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원장이이를 허가한다.
- 제9조(입학서류) 본 영재교육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별도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서약서)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보증인)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.
- 제12조(결원보충) 영재교육원 입학대상자가 전학 등의 사유로 영재교육원에 입학하지 못할 시 후보 순으로 결원을 보충한다. 단, 교과 수업 시간의 10% 를 초과한 이후에는 보충하지 아니한다.

제5장 교육과정, 수업일수 및 평가

- 제13조(교육과정)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과활동, 교과외활동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- 1. 교과활동: 과학·수학·발명·영어·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연간 90시간 이상 운영한다.
 - 2. 교과외활동 : 주제통합(탐구)활동 및 행사활동, 상담활동으로 구성하며 연간 30시간 내외로 운영한다.
 - 가. 주제통합(탐구)학습 활동 : 개인 또는 조별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탐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한 후 연구결과를 1편씩

제출하고 발표 또는 전시한다.

- 나. 체험활동: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.
- 다. 상담활동
 - 연 2회 실시
 - · 학기 초 인성 및 적성관련 상담을 통해 영재학생들의 인성 개발에 힘씀.
- 라. 봉사활동: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.
- 마. 산출물 발표회
 - 연 1회 실시
- ·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주제를 선정·수행한 후 결과를 발표 또는 전시한다. 제14조(교과용 도서)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함.
- 제15조(수업일수) 각 학년학급별로 주 1회(1회당 3시간)를 기본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연간 총 지도시간은 교과 90시간 이상, 교과외 30시간 내외로 총 120시간 내외로 한다.
- 제16조(평가)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, 연간활동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, 기록·보관한다.

제6장 학년, 학기, 휴업일

- 제17조(학년, 학기) 매 학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며 학기 구분은 하지 않는다.
- 제18조(휴업일) 연간 계획에 의거 교과활동과 교과외활동 실시 일을 제외한 나머지일 및 법으로 정하는 임시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.

제7장 전입학·휴학·퇴학 및 상벌

- 제19조(전입학) 예비합격자의 충원 기간이 지난 다음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일학군(구)내의 거주자로 당해 연도 타 지역 영재교육기관에 입학한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정원내에서 전입을 허용할 수 있다. (단, 해당학생의 무단결석 일수가 전출교 영재교육기관 총 교과시수의 10%미만인 경우에 한 함)
- 제20조(휴학) 본 영재교육원은 비정규과정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출석이

불가능한 경우에는 휴학은 불허하며 퇴학으로 처리한다.

- 제21조(퇴학) 보호자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였거나, 타 지역으로 전출한 자는 퇴학으로 처리한다.
- 제22조(징계)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를 가할 수 있다.
 - 1. 출석 정지
 - 2. 퇴학

제8장 과정의 수료

제23조(수료) 수료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- 1. 각 학년별 교육과정의 수료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각 활동의 참여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- 2.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총 교과 수업 시수의 90%이상이어야 한다.
- 3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속학교장의 확인서 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.
 - 가. 소속학교, 소속교육지원청, 소속된 상위기관의 대표로 교육기관이 주 최하는 대회에 참여하는 경우
 - 나. 기타 초,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다.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

제24조(평가작성·관리) 특별한 재능, 학업성취도 등 관찰 평가한 자료를 학교생활 기록부에 준하여 작성·관리한다.

- 1. 작성한 자료는 학년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
- 2. 소속 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

제9장 수업료 및 장학금

제25조(수업료, 입학금) 일체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징수하지 않으며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지원한다.

제26조(기타비용징수) 현장체험학습비 등은 수요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, 현장 체험학습 전에 미참석을 통보할시 계약업체 환불규정에

의해 환불 할 수 있다.

제27조(소외계층지원) 제 26조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전형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.

제28조(장학금) 수학·과학 분야의 우수자에 수여하는 외부 장학금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선발·추천한다.

제 10장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

제29조(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)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심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.

- 1. 구성시기 :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공고 한 달 이내
- 2. 구성 :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영재교육기관 관계자, 영재지도강사 중에서 영재교육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
- 3. 협의회 : 정기회 연 2회, 임시회(위원장 요구시)
- 4. 위원임기 :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기는 담당업무를 수행 또는 이천교육지원청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5. 의사결정 :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 제30조(심의사항)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
 - 2. 영재교육원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,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사항
 - 3. 이 항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〈부 칙〉

제1조 : 본 학칙은 2018. 3. 13부터 시행한다.